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부 산 지 방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가합40458 손해배상(지)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래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3.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쉴드 담당변호사 남천우
변 론 종 결	2025. 9. 24.
판 결 선 고	2025. 10. 29.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6.부터 2025. 10. 2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30%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6.부터,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2. 4.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D와 공동하여 2024. 11.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 D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별지 목록 제1기재 E카페 및 F에 별지 목록 제2기재 게시글을 각 게시하라.
3. 피고 B, D가 위 제2항 기재 게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위 기한 다음 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20. 8. 5.부터 'G'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H에서 인조미끼 등 낚시용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 B은 'I'이라는 E 카페를 운영하면서 낚시용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 C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J'이라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낚시용품을 판매하는 자이며, 피고 D는 E에서 'K' 이라는 두족류 낚시 전문 카페(이하 'K 카페'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의 상표권 등록

원고는 아래와 같은 상표를 각 등록하였다.

1) 'G' 등록상표

표장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L/ M/ N(한글), O(영문)
상표권자	원고
지정상품	제28류 낚시가방, 낚시그물, 낚시대, 낚시대 케이스, 낚시릴, 낚시바늘, 낚시방울, 낚시용구, 낚시용구 상자, 낚시용구케이스, 낚시줄, 낚시찌, 낚시추, 낚시받침대, 낚시용 발광등, 낚시용 인조미끼, 낚시용 회전고리, 견지, 입질표시기

2) 'P' 등록상표

표장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Q/ R/ S
상표권자	원고
지정상품	제28류 견지, 낚시 받침대, 낚시가방, 낚시대, 낚시바늘, 낚시용 인조미끼, 낚시용구, 낚시용구 케이스, 낚시찌 케이스, 낚시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다. 새우 모양 인조미끼에 관한 중국 제조사와 원고 사이의 대리점 계약 체결 및 판매

원고는 중국 회사인 'T'(이하 '중국 제조사'라 한다)와 사이에 중국 제조사가 공급하는 무게 10g, 길이 8.0cm의 새우 모양 인조미끼 제품(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024. 9. 1.부터 2025. 12. 31.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부여받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중국 제조사로부터 원고 제품을 공급받아 원고의 홈페이지, H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라. 피고 B의 새우 모양 인조미끼 판매글 게시

1) 피고 B은 새우 모양 인조미끼를 판매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E 카페 'I'에 아래와 같은 글을 각 게시하였다(이하 '피고 B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 한다).

① 2024. 5. 16. 자 게시물

제목 : 점핑야광새우 15g 8cm G 쉬림프 P 심해 갑오징어 문어 무늬오징어 한치 닭새우 수평 편광 새우에기로 유명한 에기 아시나요? 현재 가격이 9,800원대로 형성되어 있고 요즘 군산쪽에서 핫하다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에기를 찾았고요. 이름은 점핑야광새우 10G 10cm입니다.

② 2024. 5. 22. 자 게시물

제목 : 품절 P 점핑새우 야광새우에기 품절 G 쉬림프 P 심해 갑오징어 문어 무늬오징어 한치 닭새우 수평 편광 새우에기로 유명한 에기 아시나요? 요즘 군산쪽에서 핫한 에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P 점핑새우 야광새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10가지 색상입니다. 받으신 분들 맘에 드신다고 하시고요. 저희가 에기를 보는데 퀄리티 정말 좋습니다. 광섬유 수염이 달려 있으며, 축광기로 축광시 배쪽과 다리부분이 야광입니다. 안쪽에 구슬이 앞뒤로 움직이며 수평을 잡는 래틀에기입니다. 가격 개당 7,500원. 택배비 3,500원 별도

2) 피고 B은 U일자 'V'라는 상표를 출원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I' E 카페 및 F에 2025. 1. 19.부터 2025. 3. 7.까지 수차례에 걸쳐 'I V 점핑꼬리에기 바운싱쉬림프 심해갑오징어'와 같거나 유사한 제목의 새우 모양 인조미끼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마. 피고 C, D의 새우 모양 인조미끼 판매글 게시

1) 피고 C는 2024. 12. 6. 중국 제조사와 사이에 중국 제조사가 공급하는 길이 8cm, 무게 6.5g 및 길이 10cm, 무게 11.5g의 새우 모양 인조미끼 제품(이하 '피고 C 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가 2024. 12. 6.부터 2025. 12. 6.까지 대한민국 내에서 독점적 판매권리를 부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는 피고 D가 K 카페에서 피고 C 제품에 관한 공동구매자를 모집하면 피고 C가 해당 수량만큼 중국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피고 D에게 공급하기로 하고, 피고 D에게 별지3과 같은 내용의 '리얼새우에기 주문표'라는 파일명의 엑셀파일을 전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엑셀파일'이라 한다).

3) 피고 D는 K 카페에서 피고 C 제품에 관한 공동구매를 모집하면서 아래와 같은 각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피고 D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 한다).

① 2024. 11. 30. 오후 15:34 게시물

[제목] 오늘 중 공동구매예정인 에기 **G에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만듭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길이랑 무게만 살짝 다르나 동일한 스펙으로 만드는 에기입니다. 슬로우싱커로 만듭니다.
공동구매가 7,800원입니다.
모델별 2개 단위 구매 합계 수량 10개부터 주문 가능합니다.
현재 UV 축광되는 모델을 협의 중입니다. 아마도 바디는 UV, 다리 등은 축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하 위 사진을 '이 사건 보라색 새우 사진'이라 한다]

이미지	no.	색상	Total Length 총기장(헤드포함)	Weight 무게	Type 침강	입수량 (수량단위)
	100SL - #1	무지개새우	100mm 바디 80mm 바늘 20mm	11~12g	SLOW SINK 12S~13S/M	10
	100SL - #2	고추장새우	100mm 바디 80mm 바늘 20mm	11~12g	SLOW SINK 12S~13S/M	10
	100SL - #3	보라꽃새우	100mm 바디 80mm 바늘 20mm	11~12g	SLOW SINK 12S~13S/M	10
	100SL - #4	그린제이드새우	100mm 바디 80mm 바늘 20mm	11~12g	SLOW SINK 12S~13S/M	10
	100SL - #5	아우라퍼플새우	100mm 바디 80mm 바늘 20mm	11~12g	SLOW SINK 12S~13S/M	10
	100SL - #6	아우라블루새우	100mm 바디 80mm 바늘 20mm	11~12g	SLOW SINK 12S~13S/M	10
	100SL - #7	아우라수박새우	100mm 바디 80mm 바늘 20mm	11~12g	SLOW SINK 12S~13S/M	10
	100SL - #8	레드헤드샐새우	100mm 바디 80mm 바늘 20mm	11~12g	SLOW SINK 12S~13S/M	10
	100SL - #9	독도새우	100mm 바디 80mm 바늘 20mm	11~12g	SLOW SINK 12S~13S/M	10
	100SL - #10	닭새우	100mm 바디 80mm 바늘 20mm	11~12g	SLOW SINK 12S~13S/M	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이미지	Model No	색상	Total Length (총길이(머리포함))	Weight (무게)	Type (타입)	입수량 (1묶음단위)
	80SL - #1	무지개새우	80mm 바디 60mm 바늘 20mm	6~7g	SLOW SINK 13S~14S/M	10
	80SL - #2	고추장새우	80mm 바디 60mm 바늘 20mm	6~7g	SLOW SINK 13S~14S/M	10
	80SL - #3	보라꽃새우	80mm 바디 60mm 바늘 20mm	6~7g	SLOW SINK 13S~14S/M	10
	80SL - #4	그린제이드새우	80mm 바디 60mm 바늘 20mm	6~7g	SLOW SINK 13S~14S/M	10
	80SL - #5	아우라퍼플새우	80mm 바디 60mm 바늘 20mm	6~7g	SLOW SINK 13S~14S/M	10
	80SL - #6	아우라블루새우	80mm 바디 60mm 바늘 20mm	6~7g	SLOW SINK 13S~14S/M	10
	80SL - #7	아우라수박새우	80mm 바디 60mm 바늘 20mm	6~7g	SLOW SINK 13S~14S/M	10
	80SL - #8	레드헤드생새우	80mm 바디 60mm 바늘 20mm	6~7g	SLOW SINK 13S~14S/M	10
	80SL - #9	독도새우	80mm 바디 60mm 바늘 20mm	6~7g	SLOW SINK 13S~14S/M	10
	80SL - #10	닭새우	80mm 바디 60mm 바늘 20mm	6~7g	SLOW SINK 13S~14S/M	10

[이하 '이 사건 엑셀파일 캡쳐 사진'이라 하고, 그중 '이미지' 란에 삽입되어 있는 각 사진을 '이 사건 엑셀파일 사진'이라 한다]

② 2024. 11. 30. 17:24 게시물

[제목] 입금진행 : 리얼 새우에기 공동구매 사전주문자
주문서 작성하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입금을 부탁드립니다.
(중략)
G에기 사양과 동일하게 G에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만듭니다. (단 길이, 무게는 자료 참조)
(중략)[1)]

③ 2024. 12. 1. 자 게시물

[제목] 관심있으신 분들 : 리얼새우에기 관련...
G에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만들고 모든 스펙은 동일하나 색상하고 무게만 살짝 다르게 만들어 별개의 이름으로 출시됩니다.
시중 제품 대비 많이 저렴하기에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대부분 다른 공장

1) 이 사건 보라색 새우 사진, 이 사건 엑셀파일 캡쳐 사진 및 이 사건 엑셀파일 사진을 확대한 사진이 삽입되어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에서 비스무리하게 만드는 것도 리얼새우에기 대비 동일스펙이 아님에도 단가를 더 비싸고 심지어 13,000원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핫하기 때문이지요. (후략)

④ 2024. 12. 12. 자 게시물

[제목] 리얼에기 공동구매관련 공동구매 단가를 몇 백 원이라도 낮추고자 공급업체에 부탁을 여러 번 했음에도 결국은 공급불가냐? 시장가를 지키느냐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G P를 만드는 공장에서 동일한 사양으로 생산함에도 이름값인지** (후략)

⑤ 2025. 1. 8. 자 게시물

[제목] 리얼새우에기 공급 관련 리얼새우에기가 일정보다는 빠른 입고가 될 듯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급했듯이 우리 리얼새우에기는 G에기를 만드는 동일 공장에서 동급 사양으로 제작 중입니다. 또한 저는 G에기도 공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의 공구얘기를 진행한 곳은 현재 디자인특허권을 가진 정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에기로, 중국 내에서 이미 특허권에 대하여 그 권리행사를 시작했다는 후문입니다.

⑥ 2025. 1. 17. 자 게시물

[제목] 시즌25 신상품 리얼새우에기 45세트 한정 공동구매 **G에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만든 신상품입니다.** 꼬리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협력업체 재고 보유분이고 무게는 약 10~11g** 협력업체 한정수량이다보니 부득이하게 세트판매로 공급만 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중략) 1월 20일 출고되는 협력업체 신상품입니다. **G에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만듭니다.**

4) 피고 C는 'W'라는 상호로 E카페에서 낚시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에게도 이 사건 엑셀파일을 전송하고 피고 C 제품의 공동구매를 모집할 것을 의뢰하였고, 위 사람은 2024. 12. 4. 이 사건 엑셀파일 캡쳐 사진이 삽입된 아래와 같은 공동구매 모집글을 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시하였다.

[제목] 1~2월 입고예정인 신형 토부새우에기입니다. 멤버공개입니다. 이번주 금요일 저녁까지 합산하여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빠른 주문 주세요~~ UV케이무라입니다~ 무늬는 축광입니다. 필요하신 모델 댓글 달아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됩니다. 80mm는 아무데도 없던 제품 신형입니다. 기존 제품은 약간 크시다 싶으신 분들은 80mm 주문 추천해드립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내지 14, 39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B은 피고 B의 이 사건 각 게시물에서 원고의 등록상표이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표지 및 (나)목의 영업표지에 해당하는 'G'와 'P'라는 명칭 및 원고 제품의 특징에 해당하는 '10g, 10cm', '야광, 축광, 수평, 편광'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나아가 중국 제조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원고가 '심해보라새우'라는 명칭으로 판매하는 보라색 제품은 원고만 판매할 수 있고 다른 무게나 길이로도 제작할 수 없는 것임에도 'X 제품은 품절입니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원고 제품인 보라색 새우 모양 인조미끼를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고 B이 원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 B의 행위는 원고의 'G' 및 'P' 각 등록상표를 침해한 것이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 (다), (라), (바), (타), (파)목[2]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상표법 제113조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6조에 따른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로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E카페 및 제2항 기재 F에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글을 게시할 것을 청구한다(상표법에 따른 각 청구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각 청구는 선택적 청구이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상품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상품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목에서 "타인의 영업표지"라 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혼동하게 하는 행위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에 관하여는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1)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그 타인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1)에 해당하는 자의 승계인으로서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오인)하게 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파.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1) 관련 법리

상표법 제89조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제108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3] 각 목 소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바, 어떤 표지의 사용이 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과 타인의 업무에 관계된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기능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1174 판결 등 참조).

(2) 'G' 등록상표 침해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G' 등록상표에 관하여 M 등록을 마쳤고, H에서 'G'라는 브랜드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G' 등록상표를 브랜드명으로 사용하면서 낚시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② 피고 B은 피고 B의 이 사건 각 게시물에서 'G'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해당하는 낚시용 인조미끼의 판매를 광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B은 위 각 게시물에서 'G 쉬림프 P 심해 갑오징어 문어 무늬오징어 한치 닭새우 수평 편광 새우에기로 유명한 에기 아시나요? 현재 가격이 9,800원대로 형성되어 있고 요즘 군산쪽에서 핫하다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에

3) 상표법 제2조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정가표)·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기를 찾았고요. 이름은 점핑야광새우 10G 10cm입니다.'라고 하면서 'G' 등록상표를 표시한 점, ④ 피고 B은 위 각 게시물에서 'G'는 낚시용 미끼 제품인 '에기'를 설명하기 위한 문맥에서 사용되었을 뿐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낚시용 미끼 제품인 에기를 설명하기 위하여 원고의 브랜드명으로 사용되는 'G'를 명시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위 각 게시물에는 피고 B이 판매하는 제품이 원고 제품과 다른 제품이라는 점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위 각 게시물의 문맥 상 소비자들로서는 피고 B이 판매하는 미끼 제품이 원고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원고는 2024년경 H에서 원고 제품의 상품명을 'G 리핑쉬림프 심해 갑오징어 에기 문어 무늬오징어 한치 닭새우 수평 편광 새우에기' 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은 이러한 원고 제품의 상품명을 위 각 게시물에 붙여넣기 하여 일부만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B은 위 각 게시물에서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의 특징을 '광섬유 수염이 달려 있으며, 축광기로 축광시 배쪽과 다리부분이 야광입니다. 안쪽에 구슬이 앞뒤로 움직이며 수평을 잡는 래틀에기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 제품의 특징과 동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G'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G'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관한 광고에 표시한 행위는 'G' 등록상표에 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P' 등록상표 침해 여부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바(상표법 제82조 제1항),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P' 등록상표가 등록된 날은 R이고, 피고 B이 'P'라는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을 작성한 것은 그 전인 2025. 3.경까지이므로, 피고 B이 원고의 'P' 등록상표에 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

위와 같이 피고 B은 원고의 'G'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는바, 피고 B은 위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영업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판단 범위

원고는 'P'라는 명칭이 그 상표등록 전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진 원고의 상품 표지, 영업표지 내지 식별표지에 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의 이 사건 각 게시물에서 'P'라는 표지를 사용하고 아울러 원고 제품의 특징을 나열하며 'X은 품절입니다'라고 하면서 원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또한 원고가 2024. 5.경 'P'에 관하여 상표출원 중인 사실을 알리면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 B이 'V'라는 상표를 출원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E카페 및 F에 2025. 1. 19.부터 2025. 3. 7.까지 수차례에 걸쳐 'I V 점핑꼬리에기 바운싱쉬림프 심해갑오징어'와 같거나 유사한, 'P'가 포함된 제목의 새우 모양 인조미끼 판매글을 게시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G' 등록상표 침해 행위 및 'G' 명칭 사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와 별개의 행위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G' 등록상표를 사용한 행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였고 상표권 침해에 따른 청구와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선택적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B이 'G'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판매글을 게시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각 게시물에서 원고 제품의 특징을 기술하고 보라색 새우 모양 인조미끼를 'X'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칭한 행위에 관하여는 이러한 표현이 'G'나 'P'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과 결합하여 소비자들의 혼동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항에서는 'P'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위와 같은 판매글을 작성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만 살펴본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 (다), (타)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 (다), (타)목에서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 내지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도399 판결, 1997. 4. 24.자 96마675 결정 등 참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되며, 단순한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거나 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표 또는 상품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며,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의 여부는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10562 판결 등 참조).

갑 제35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2023. 12.경부터 원고가 H에서 'G 리핑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림프 P 시리즈1 심해보라새우[4] 갑오징어 고수심특화 리얼 모양 새우에기' 등의 상품명으로 원고 제품을 판매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P는 '날다'라는 뜻의 일본어 'Y'와 인조미끼를 의미하는 일본어 'Z'의 합성어로, 실제 새우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진 인조미끼를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인 점핑새우, 점핑쉬림프 등을 일본어로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원고 제품의 상품명에서 P 뿐만 아니라 '리핑쉬림프'라는 단어도 함께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뛰어오르는'을 의미하는 영어 리핑(Leaping)과 새우를 의미하는 영어 쉬림프(Shrimp)의 합성어로, P 또한 리핑쉬림프와 같이 원고 제품의 명칭이라기보다는 원고 제품의 외관, 형태, 기능을 외국어로 나타낸 단어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식별력이 분명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원고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2023. 12.경으로, 피고 B의 이 사건 각 게시물이 작성된 2024. 5.경까지는 약 5개월 밖에 경과하지 않은 점, ④ 'P'가 주지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 B이 각 판매글을 게시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35호증의 1(P 매출내역 검색)의 경우 피고 B의 게시물이 작성된 이후인 2025년 4, 5월의 매출내역이고, 갑 제35호증의 2, 3(P 키워드 매출비중 계산내역)의 기재만으로는 'P'라는 키워드로 발생한 매출액의 발생시기를 알 수 없는바, 피고 B의 이 사건 각 게시물 게시 당시 'P'를 검색어로 발생한 매출액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⑤ 갑 제25호증(고객상품후기)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제품에 관한 고객 후기 게시판에 '비슷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원조다', '올해는 P랑 비스무리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던데 그래도 원조

4) 원고 제품 중 보라색 제품에 해당하고, 다른 색상의 제품에 대해서는 그 색상을 표시하는 다른 명칭이 사용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는 못 따라가죠.' 등의 후기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2025년 5월에 작성된 것이고, 갑 제42, 43호증의 유튜브 영상 및 사진에 의하면 낚시 전문 유튜버가 원고 제품의 장점을 소개하면서 '지난 해부터 핫해진 에기가 있죠? 새우에기의 원조라고 불리는 G사의 P입니다.'라고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영상 역시 2025. 4. 3. 게시된 영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후기 및 유튜브 영상은 원고의 광고나 홍보의 일환으로 작성 또는 게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⑥ 갑 제35호증의 4(E 정산된 상품명과 고객리스트-202312 판매자료)는 2023년 12월 원고의 상품별 정산내역을 나타내는 자료일 뿐 'P' 명칭의 주지성을 알 수 있는 자료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이 사건 각 게시물 게시 당시 'P'라는 명칭이 원고 제품을 지칭하는 말로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원고의 상품표지, 영업표지 또는 원고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에 해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P'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품표지, 영업표지 또는 원고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에 해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 없이 이유 없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라), (바),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라)목은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바)목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P'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글을 작성한 행위가 위 각 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 B은 원고의 등록상표를 사용해 새우 모양 인조미끼를 판매하여 AA 명의 농협계좌로 3,693,000원, B 명의 카카오뱅크계좌로 101,632,500원, B 명의 농협계좌로 30,620,0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139,945,500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상표법 제109조[5], 제110조 제3항[6], 제110조 제7항[7], 제111조[8]에 따라 피고 B에게 손해 중 일부로 1천만 원을 청구한다.[9]

5)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③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7) 구 상표법(2025. 1. 21. 법률 제2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8)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 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9) 원고는 소장에서 일단 1,000만 원을 청구한다고 기재하였고, 2025. 8. 2. 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B이 합계 135,945,500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일부 청구로 선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의 인정 여부

상표법 제110조 제3항은 '상표권자가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1 내지 3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4. 3.부터 2025. 6.까지 사이에 AA 명의의 농협계좌, 피고 B 명의 카카오뱅크 및 농협계좌로 입금된 돈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 합계액이 상표권 침해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얻은 수익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B이 'G'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작성한 판매글은 2024. 5. 16. 자 게시물(갑 제6호증의 1) 및 2024. 5. 22. 자 게시물(갑 제6호증의 2) 뿐이고, 원고가 발췌한 각 입금내역이 위 각 게시물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발췌한 각 입금내역이 위 각 게시물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매출액 중 피고 B이 얻은 이익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G' 등록상표의 사용이 피고의 매출액이나 이익액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손해액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른 손해액 산정

법원은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상표법 제110조 제6항). 이 사건은 'G' 등록상표에 관한 피고 B의 상표권 침해행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G' 등록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알려진 정도, 피고 B의 침해기간 및 침해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3,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4. 6. 16.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원고의 'G' 등록상표를 침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이 당연히 침해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상표법 제113조에서 정한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는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것 외에 그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상표권자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되었음까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227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의 행위에 의하여 원고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 C, D는 공모하여, 피고 D의 이 사건 각 게시물에서 원고의 'G' 등록상표와 원고의 저작물이자 영업표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엑셀파일 사진 및 이 사건 보라색 새우 사진을 사용하고, 원고 제품은 원고가 전용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은 판매할 수 없음에도 'G 에기와 동일스펙이다', 'G 에기도 판매할 예정이다', '(원고 제품과 동일한 무게인) 10g인 제품 재고가 있다'라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고 D가 원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혼동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 C는 원고의 영업표지인 'P'로 상품을 검색하는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P'라는 명칭을 이 사건 엑셀파일에 기재하여 전송한 뒤 피고 D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공동구매를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D 외에도 'W'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소매상에게 이 사건 엑셀파일 사진을 전송하여 주고 공동구매를 모집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 C, D의 행위는 ① 이 사건 엑셀파일 사진 및 보라색 새우 사진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복제권, 동일성유지권, 공중송신권, 2차 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② 'G' 등록상표에 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③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 (다), (라), (바), (타), (파)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피고 C는 1억 4,764만 원, 피고 D는 42,207,100원의 수익을 얻었는바,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상표법에 따른 각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하여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피고 C는 피고 D 외에도 다른 소매상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을 통하여 원고 영업 표지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었으므로, 피고 C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을 청구하고, 피고 D에 대해서는 피고 C와 공동하여 위 5천만 원 중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또한 피고 D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영업상 신용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E카페에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글을 게시할 것을 청구한다.

나.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엑셀파일 사진은 원고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기 위하여 원고 제품을 촬영 및 보정하여 제작한 사진저작물들을 피고 C가 색상만 다르게 편집한 것이고, 이 사건 보라색 새우 사진 또한 원고가 촬영, 편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진으로서, 원고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엑셀파일 사진이 원고가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원고 제품 사진을 피고 C의 직원들이 색상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편집한 사진이라는 사실 및 이 사건 보라색 새우 사진이 원고가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사진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나 제2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이 사건 엑셀파일을 피고 D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D가 공동구매를 위하여 제품 상세사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피고 C가 '보내드린 사진을 사용하라'고 답변한 사실, 피고 D가 피고 C 제품의 기능(부위별 야광, UV, 축광 기능)에 관하여 질문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피고 C가 설명을 위하여 이 사건 보라색 새우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 D가 이 사건 피고 D의 각 게시물에 이 사건 엑셀파일 사진과 이 사건 보라색 새우 사진을 여러 차례 게시한 사실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 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26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사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엑셀파일 사진은 판매 대상이 되는 원고 제품을 사진 중앙 부분에 위치시키고 근접한 상태에서 촬영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보라색 새우 사진 또한 원고 제품의 야광 기능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두운 곳에서 원고 제품을 근접하여 촬영한 후 각 부위별로 설명 문구를 기재한 것인 점, ③ 위 각 사진이 촬영된 목적은 피사체인 원고 제품의 형태와 문양 등 제품 자체를 충실하게 표현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조명, 카메라, 렌즈, 전문포토그래퍼를 이용해 비용과 노력을 들여 위 각 사진을 촬영하고 후보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사진은 원고 제품을 근접하여 촬영한 사진에 불과하고 위 각 사진을 촬영한 구도나 밝기 등은 인조미끼 제품에 대한 광고 사진에 널리 사용되는 표현방식에 불과하여 누가 찍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④ 실제로 피고 C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피고 C 제품을 촬영한 사진도 이 사건 엑셀파일 사진 및 보라색 새우 사진과 큰 차이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엑셀파일 사진은 제품 주문 시 색상 구분에 참고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삽입되었고 그 사진들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해당 사진이 원래 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지고 있던 표현형식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엑셀파일 사진 및 보라색 새우 사진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정도로 창작적 노력과 개성이 드러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엑셀파일 사진 및 보라색 새우 사진이 원고의 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즉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피고 D가 피고 D의 이 사건 각 게시물에서 'G 에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만듭니다.'라고 하는 등 'G'라는 명칭을 표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 C는 원고 제품을 공급하는 중국 제조사와 사이에 원고 제품과 길이와 무게만 다른 피고 C 제품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의 이 사건 각 게시물에는 피고 C 제품이 원고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장에서 길이와 무게만 다르게 만든 제품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명시되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피고 C 제품을 원고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바, 피고 D가 'G' 등록상표를 피고 C 제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여 그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 C, D가 'P'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 D의 이 사건 각 게시물 작성 당시 'P' 등록상표는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상표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당시 'P'에 관하여 상표출원 중이었으므로 상표법 제107조에 따른 침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상표법 제107조 제1항은 상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상표권이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할 뿐 출원 중인 상표에 관하여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C, D가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제2조 제1호 (가), (나)목의 혼동행위 해당 여부

원고는, 피고 C, D가 원고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해당하는 'G', 'P'라는 명칭 및 이 사건 엑셀파일 사진 및 보라색 새우 사진을 사용하여 피고 C 제품을 판매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상품이나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피고 D의 이 사건 각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비자들은 피고 C 제품은 원고 제품을 공급하는 공장에서 다른 부분은 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일하되 길이와 무게는 다르게 만든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무게 10g인 제품은 원고가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고 D가 2025. 1. 17. 자 게시물(갑 제8호증의 10)에서 10g 제품의 재고가 있다고 한 것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도 주장하나, 위 게시물에는 'G 에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만든 신상품입니다. 무게는 약 10~11g'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무게가 10g이라고 단정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제품은 피고 C 제품 중 길이 10cm, 무게 11.5g인 제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들로서는 무게가 10g인 제품은 원고에게만 독점 판매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피고 D가 판매하는 제품이 원고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C는 이 사건 엑셀파일의 제목을 '리얼새우 P正品 주문표'라고 기재하여 피고 D 및 W 측에게 전송하고 공동구매에 활용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엑셀파일에 'P'라는 원고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한 것은 소비자들을 혼동하게 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 D의 이 사건 각 게시물 및 W의 게시물 게시 당시 'P'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원고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D의 이 사건 각 게시물 및 W가 작성한 공동구매 모집글에는 이 사건 엑셀파일 중 'P'라는 명칭이 들어간 제목 부분은 삭제하여 캡쳐된 채로 게시되었으므로 소비자들에게 위와 같은 부분이 노출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 D가 피고 C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 D의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작성한 행위 및 피고 C가 'W' 측에게 이 사건 엑셀파일을 전송하여 공동구매를 모집하게 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목의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이유 없다.

2) 제2조 제1호 (다), (라), (바), (타),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 D가 피고 D의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작성하여 피고 C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 (라)목에서 정한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바)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 등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타)목에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식별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파)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철

판사 김서현

판사 우희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별지1

피고 B, 피고 D 운영 각 E카페 및 F

1. 피고 B (I 카페)

(인터넷주소 1 생략)

2. 피고 B (F)

(인터넷주소 2 생략)

3. 피고 D (K 카페)

(인터넷주소 3 생략)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별지2

1. 피고 B(I 카페 및 F)

2024. 5. 16.과 2024. 5. 22. 각 게시한 공동구매 게시글에서

① G 명칭은 G의 동의없이 무단사용한 것이며 원고의 상표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한다.

② P 명칭은 원고가 24년 5월 상표출원 중 이었으며, 25년 4월 18일 이후 등록이 완료되어 원고의 상표임을 인정한다.

③ X 명칭은 G의 심해보라새우를 지칭한 것이고 해당 제품은 10g 제품뿐이며, 다른 무게로는 제작도 되지 않고 오직 G만이 국내유통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다른 무게로는 구입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2. 피고 D (K 카페)

2024. 11. 30.부터 25. 1. 17.까지 각 게시한 공동구매 관련 게시글에서

① G 에기 제품과 무게와 길이가 다른 것은 G 제품과 동일스펙이 아님을 인정한다.

② G 에기 제품의 상품사진 도용과 관련하여 G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한다.

③ G 에기 제품과 길이와 무게가 같은 제품인데 마치 G와 다른 별개의 이름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잘못이 있음을 인정한다.

④ G 에기 제품의 스펙인 길이 100mm, 10g 에 대하여 이는 G만이 제작 및 유통이 됨에도 추가구매나 유통이 될 수 있다고 기재한 것은 잘못이 있음을 인정한다.

⑤ G와 동일한 스펙의 제품은 오직 G만이 제작 및 유통이 가능함에도 동일 스펙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품에 대해 재고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부분은 G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한다. 끝.

대한민국법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1-26

별지3

리얼새우 [] 정품 주문표

일자 :

상호 :

※ 바디100mm / 80mm (SLOW SINK TYPE) 두가지 사이즈 생산됩니다 , 색상은 10가지 이며 차후 추가됩니다.
※ 남기는 별도 안내드리며 남품은 주문순서에 따라서 진행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납기일에 주문금액의 100% 입금조건이며 선입금시 할인 적용됩니다.

Model1. SLOW SINK 80mm(body 60mm) / 6~7g



모델 1 - 80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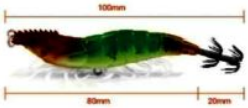




이미지	Model No.	색상	Total Length 총기장(머눌포함)	Weight 무게	Type 침강	입수량 (주문단위)	소비자가	공급가 (일반단가)	공급가 (선주문 입금단가)	주문수량	금액
	80SL - #1	무지개새우	80mm 바디 60mm 머눌 20mm	6~7g	SLOW SINK 13S~14S/M	10	9,800 ₩	₩ 5,900	₩ 5,400		₩ -
	80SL - #2	고추장새우	80mm 바디 60mm 머눌 20mm	6~7g	SLOW SINK 13S~14S/M	10	9,800 ₩	₩ 5,900	₩ 5,400		₩ -
	80SL - #3	보라꽃새우	80mm 바디 60mm 머눌 20mm	6~7g	SLOW SINK 13S~14S/M	10	9,800 ₩	₩ 5,900	₩ 5,400		₩ -
	80SL - #4	그린제이드새우	80mm 바디 60mm 머눌 20mm	6~7g	SLOW SINK 13S~14S/M	10	9,800 ₩	₩ 5,900	₩ 5,400		₩ -
	80SL - #5	아우라퍼플새우	80mm 바디 60mm 머눌 20mm	6~7g	SLOW SINK 13S~14S/M	10	9,800 ₩	₩ 5,900	₩ 5,400		₩ -
	80SL - #6	아우라블루새우	80mm 바디 60mm 머눌 20mm	6~7g	SLOW SINK 13S~14S/M	10	9,800 ₩	₩ 5,900	₩ 5,400		₩ -
	80SL - #7	아우라수박새우	80mm 바디 60mm 머눌 20mm	6~7g	SLOW SINK 13S~14S/M	10	9,800 ₩	₩ 5,900	₩ 5,400		₩ -
	80SL - #8	레드헤드생새우	80mm 바디 60mm 머눌 20mm	6~7g	SLOW SINK 13S~14S/M	10	9,800 ₩	₩ 5,900	₩ 5,400		₩ -
	80SL - #9	독도새우	80mm 바디 60mm 머눌 20mm	6~7g	SLOW SINK 13S~14S/M	10	9,800 ₩	₩ 5,900	₩ 5,400		₩ -
	80SL - #10	닭새우	80mm 바디 60mm 머눌 20mm	6~7g	SLOW SINK 13S~14S/M	10	9,800 ₩	₩ 5,900	₩ 5,400		₩ -
합계										0	₩ -

Model2. SLOW SINK 100mm(body 80mm) / 11~12g

모델2 - 100mm





이미지	no.	색상	Total Length 총기장(머눌포함)	Weight 무게	Type 침강	입수량 (주문단위)	소비자가	공급가 (일반단가)	공급가 (선주문 입금단가)	주문수량	금액
	100SL - #1	무지개새우	100mm 바디 80mm 머눌 20mm	11~12g	SLOW SINK 12S~13S/M	10	9,800 ₩	₩ 5,900	₩ 5,400		₩ -
	100SL - #2	고추장새우	100mm 바디 80mm 머눌 20mm	11~12g	SLOW SINK 12S~13S/M	10	9,800 ₩	₩ 5,900	₩ 5,400		₩ -
	100SL - #3	보라꽃새우	100mm 바디 80mm 머눌 20mm	11~12g	SLOW SINK 12S~13S/M	10	9,800 ₩	₩ 5,900	₩ 5,400		₩ -
	100SL - #4	그린제이드새우	100mm 바디 80mm 머눌 20mm	11~12g	SLOW SINK 12S~13S/M	10	9,800 ₩	₩ 5,900	₩ 5,400		₩ -
	100SL - #5	아우라퍼플새우	100mm 바디 80mm 머눌 20mm	11~12g	SLOW SINK 12S~13S/M	10	9,800 ₩	₩ 5,900	₩ 5,400		₩ -
	100SL - #6	아우라블루새우	100mm 바디 80mm 머눌 20mm	11~12g	SLOW SINK 12S~13S/M	10	9,800 ₩	₩ 5,900	₩ 5,400		₩ -
	100SL - #7	아우라수박새우	100mm 바디 80mm 머눌 20mm	11~12g	SLOW SINK 12S~13S/M	10	9,800 ₩	₩ 5,900	₩ 5,400		₩ -
	100SL - #8	레드헤드생새우	100mm 바디 80mm 머눌 20mm	11~12g	SLOW SINK 12S~13S/M	10	9,800 ₩	₩ 5,900	₩ 5,400		₩ -
	100SL - #9	독도새우	100mm 바디 80mm 머눌 20mm	11~12g	SLOW SINK 12S~13S/M	10	9,800 ₩	₩ 5,900	₩ 5,400		₩ -
	100SL - #10	닭새우	100mm 바디 80mm 머눌 20mm	11~12g	SLOW SINK 12S~13S/M	10	9,800 ₩	₩ 5,900	₩ 5,400		₩ -
합계										0	₩ -
								Total		0	₩ -